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블럭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2.28.임.(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과밀억제권역이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 국민은행 청약 통장 가입자에 한함)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자격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음.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은 물론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2017.12.28.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자격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됨.(주택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17.08.03.)됨에 따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됨.(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접수)

■ 본 아파트는 2017.11.24. 및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가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동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광명시·구리시·안양시 동안구 - 전역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광교역지개발지구·부산 기장군 일광면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 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대구시 수성구·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투기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나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8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n-pradium.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해당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해 해당제한(당첨자발표일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지속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분양권 전매 및 해당제한기간
 - 서울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과열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됨.(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해당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됨.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시기 바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전 제출하는 서류중 제2항 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서울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료처리됨.
- 주택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2순위		
일정	2019.01.02(수)	2019.01.03(목)	2019.01.04(금)	2019.01.11(금)	2019.01.22(화)~2019.01.24(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www.ap2you.com)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홍보관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천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택사업과-18480호(2018.12.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4-4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1,814.0000㎡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개동, 오피스텔 1개동,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복합시설 중 아파트 1개동(지하5층~지상20층, 총 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약식 표기	주택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18001334-01	59.9900A	59A	59.9900	24.8172	84.8072	54.7436	139.5508	19.7702	54	3
	2018001334-02	59.9300B	59B	59.9300	25.1994	85.1294	54.6890	139.8184	19.7504	18	1
				계						72	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	라인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잔금(30%)							
									계 약 시	1차(10%) (2019.05.20.)	2차(10%) (2019.09.20.)	3차(10%) (2020.01.20.)	4차(10%) (2020.05.20.)	5차(10%) (2020.09.20.)		6차(10%) (2020.12.20.)
59.9900A	54	3	1,2,5호	1호	1	786,659,100	224,340,900	1,011,0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303,300,000
				2호	1	785,102,900	223,897,100	1,009,000,000	100,900,000	100,900,000	100,900,000	100,900,000	100,900,000	100,900,000	100,900,000	302,700,000
				5호	1	787,437,200	224,562,800	1,012,0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303,600,000
		4	1,2,5호	1호	1	790,549,600	225,450,400	1,016,000,000	101,600,000	101,600,000	101,600,000	101,600,000	101,600,000	101,600,000	101,600,000	304,800,000
				2호	1	789,771,500	225,228,500	1,015,0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304,500,000	
				5호	1	791,327,700	225,672,300	1,017,0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305,100,000	
		5	1,2,5호	3	801,443,000	228,557,000	1,030,0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309,000,000
				6	831,010,800	236,989,200	1,068,0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320,400,000
				7~19	39	869,137,700	247,862,300	1,117,0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335,100,000
				최상층	3	916,601,800	261,398,200	1,178,000,000	117,800,000	117,800,000	117,800,000	117,800,000	117,800,000	117,800,000	117,800,000	353,400,000
59.9300B	18	3호	3	1	754,757,000	215,243,000	970,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97,000,000	291,000,000	
			4	1	758,647,500	216,352,500	975,0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292,500,000		
			5	1	768,762,800	219,237,200	988,0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296,400,000		
			6	1	798,330,600	227,669,400	1,026,0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307,800,000		
			7~19	13	836,457,500	238,542,500	1,075,0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322,500,000		
			최상층	1	883,921,600	252,078,400	1,136,000,000	113,600,000	113,600,000	113,600,000	113,600,000	113,600,000	113,600,000	113,600,000	340,800,000	

■ 공통 유의사항

-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 상기 공급금액은 층·호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본 아파트의 최상층세대는 다락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따라 하부에 구조벽체로 인해 기준층 세대와 다소 차이가 있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단, 그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본 사업지는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변경되어 있을 수 있음.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에 따라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됨.
-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주민등록표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및 계약 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
-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5층이하의 경우 최하층을 배정하지 않음)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8) 현재 서울특별시내 1년 이상(2017.1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청약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중사자특별공급) 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호 구분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재당첨 제한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 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바람.(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청약 신청시 “청약 신청 유의 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정제 적용 기준” 확인 바람.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정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정제 100% / 추첨제 0%) 1) 가정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 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2017.1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해당구간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주택형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
전용면적 85㎡초과	50%	50%

-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 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별표1의 1호]

구분	적용 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p> <p>3)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4)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가) 청약자의 배우자 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 포함)를 아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p> <p>2) 배우자 -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p> <p>3)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나) 단, 직계존속 중 1인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분양권등 : 2018.12.11 이후 공급계약(단,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에 한함) 또는 매매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단, 동조 제6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불가)</p> <p>4)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를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나) 단,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p>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별표1의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①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3.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p>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이상(2017.12.28.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별표1]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p>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8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하며 당첨사실을 본인이 개별적으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확인 가능함.

4.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됨.
-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 이내에 공급유형별 최초 예비입주자 공급(추첨)을 진행할 계획임.(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이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과 ②의 처리일자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일반공급 청약 방법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19.01.02(수) / 08:00 ~ 17:30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2019.01.03(목) / 08:00 ~ 17:30	
	2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19.01.04(금) / 08:00 ~ 17:30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 대조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1순위 청약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서울)” 1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특별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불가(위반시 부적격처리)
 - “해당지역(서울)”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해당지역” 접수시 부적격처리)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금융결제원(쏘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서비스/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 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일반공급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 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청약접수 방법 : 청약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1.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사전검수일정	당첨자 계약체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일시:2019.01.11(금)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ou 앱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2019.01.16(수)-01.20(일) 10시~16시 ▶장소: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홍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5-12)	▶일시:2019.01.22(화)-01.24(목) 10시~16시 ▶장소: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홍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5-12) ▶문의:1544-2877

-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를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음.(단, 임의 분양시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자 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시 부적격 서류 검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람.
- ▶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람.

2.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www.ap2you.com)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01.11.(금) ~ 2019.01.20.(일)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 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 → 1 → 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01.11.(금)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3.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동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분양계약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공급 신청서	▶인터넷 청약 신청 당첨자는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유·무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미만엔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및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인터넷청약(APT2you)으로 청약한 경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제출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부적격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대리인)	
	○		인장(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계약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1순위 당첨자 중 계약체결 후에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

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 단,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음[단, 임의 분양시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 처리됨.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5.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6.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계약금 납부방법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 ▶ 아래 계좌에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입금자 표기의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01-0241-6765-8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1센터

- ※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상기 계좌의 예금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임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계약자 대출 안내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함.
-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금의 대출금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함.

- ▶ 계약자 개별 대출 실행시, 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아파트(분양가 9억원 이하)의 중도금 대출 금리 대비 상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계약시)	중도금(2020.05.20.)	잔금(입주시)	
59A	15,000,000	1,000,000	2,000,000	12,000,000	
59B	15,000,000	1,000,000	2,000,000	12,000,000	

■ 아파트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추후 변경 불가)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비확장 부위 발코니창호가 포함된 가격임.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상품카탈로그 또는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용(유리, 창틀)이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발코니 확장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비확장 세대 상·하·좌·우세대)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창호 크기, 세대 간 마감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틀, 유리 또는 기타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시기 바람.
-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 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불가 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세탁실 상부 천정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연결 덕트가 천정에 노출될 수 있음.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미계약시 발코니 확장 품목이 미설치됨.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브랜드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관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사에서는 기타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제외)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 ▶ 납부방법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 ▶ 아래 계좌에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입금자 표기의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01-0241-6768-9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1센터

- ※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상기 계좌의 예금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임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VAT포함)

타입	선택1			선택2			비고
	설치대수	장소	금액	설치대수	장소	금액	
59A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5,800,000	2대	거실+안방	3,700,000	
59B	4대	거실+안방+침실1+알파룸	5,800,000	2대	거실+안방	3,700,000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 항목에 대한 설치 비용이 감액하여 반영된 금액임.
- ▶ 시스템 에어컨 공사 등은 이행의 착수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의 계약,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함.

-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추가 선택이 가능한 항목임.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음.
-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59A타입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9B타입은 거실, 안방, 침실1, 알파룸의 냉매매립배관 기본 사항은 설치가 제외됨.

■ 유상옵선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발코니 확장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홍보관 제출[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01-0241-6768-9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1센터

▣ 유상옵선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시스템 에어컨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추후 변경 불가)이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 실외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 외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제품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주체가 선정 예정이며, 계약자는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회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세대 내 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59A타입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9B타입은 거실, 안방, 침실1, 알파룸 기준으로 총 4개소 냉매배관이 시공됨.(냉매 박스 시공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유상옵선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유상옵선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6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예정일 및 사전점검 안내

- ▶ 입주예정일 : 2021년 06월 예정
 -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지정개시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 또는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아니함
-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2. 소비자 피해보상

-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됨

3. 부대복리시설

- ▶ 주차장(지하),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회의실, 근린생활시설, 택배실 등(일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동사용)

4.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 주차장 차로폭 : 6m
-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최소 2.35m
-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3m

5.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코담엔지니어링	(주)코담엔지니어링	(주)코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02,160,000 원	26,376,200 원	17,644,700 원	8,331,100 원
비고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감리회사 관련

-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따른 연결한 주택단지로서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 가능
- ▶ 건축 감리금액 :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블록(역삼동 654-4 외 1필지)·2블록(역삼동 654) 통합 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6.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54,978,700,000 원	제 01282018-101-00170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p>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p>【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p> <p>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p>
-----------------	---

	<p>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p>※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p>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p>	<p>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p>
<p>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p>	<p>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획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 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음선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p>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함

7.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 당 사업장은 1,000세대 미만 사업장으로서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의해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아님
- ▶ 당 사업장은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99호)에 의거하여 분양이후 녹색건축 예비인증 우수등급, 에너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을 득할 예정이며, 본인증은 사용승인 이후 진행예정임
-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은 각종 인증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자재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해당 세대현관에 각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다른 고효율 조명기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9.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등록번호
사업주체	주식회사 시티글로벌	211-88-79236
시공사	주식회사 시티건설	211-88-79240
	주식회사 시티해양건설	220-86-90207

1. 공동사항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비율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에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 세대 내부 추가선택 품목 관련사항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 본인 동·호수 지정시 홍보관과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 가구 위치 등)이 될 경우, 내·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
-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인접단지와의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 연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 공고문에 표기된 등급은 예비등급이며, 최종 인증 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 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출입구 문주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일부세대는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 기타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2. 건축 관련 유의사항

- ▶ 다음의 건축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음.
- ### 1. 홍보관
- ① 홍보관은 59A 기준층(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홍보관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품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외 부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② 홍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제품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가격급등 및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③ 홍보관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홍보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홍보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④ 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 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⑤ 홍보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⑥ 마감자재 내용 및 가구형태 등은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홍보관을 참조하기 바람. 세대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감자재, 가구 및 제품품목 등의 타입은 홍보관에 설치된 타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⑦ 제공되는 품목, 선택할 수 있는 품목 및 평면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다른 적용되지 않은 평면의 형태 또는 제품품목(가구 및 시스템선반 등)의 적용을 요구하실 수는 없음.
 - ⑧ 홍보관의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인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⑨ 홍보관에는 전시용으로 설치한 품목(전시용 가구 등)과 실제 시공 시와 다르게 전시된 사항(벽체 및 도어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

고 계약하시기 바람.

- ⑩ 홍보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분양승인 시 홍보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함.
- ⑪ 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⑫ 홍보관 및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⑬ 홍보관 내 단위세대 조도량은 전시조명 등에 의해 실제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등기구의 색온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세대

1) 향, 조망

- ①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② 인접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③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상안테나, 피뢰침, 산림재해 및 산불예방을 위한 무선감시카메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 가구 및 마감

- ① 설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②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벽, 천장 등)은 별도 마감이 없음.
- ③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④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 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⑤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 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⑥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⑦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⑧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⑨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현관창고장 내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음.
- ⑩ 일부세대는 경량벽체의 적용으로 장식물 등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정물이 필요하며, 타공 시 파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⑪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⑫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치 및 설치의 평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⑬ 최상층 다락 계단 설치로 인한 펜트리 삭제됨.

3) 기타

- ① 단위세대 외부창호는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 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디자인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②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③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의 발생 및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④ 상부세대 비확장 시, 하부세대의 천정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정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정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음.
- ⑤ 카탈로그 상에서 제시되는 확장형 선택형을 제외하고,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형은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함.
- ⑥ 비확장형 선택 시 확장형 선택 시와 기본제공품목 및 공간별 선택사항이 상이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 ⑦ 최상층 관련 사항
 - 최상층세대 다락의 전면 테라스 마감은 방수공사 위 콘크리트로 시공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세대 다락은 낙엽 등 이물질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락으로 빗물 등 우수가 유입될 수 있어 배수구에 이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최상층세대 다락은 별도의 냉난방 시설과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않으며, 임주자의 임의 변경이 불가함(다락부분 바닥난방 설치등 임의 변경시 건축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 최상층세대 다락 상부에는 태양광집열판이 설치되었으며, 형태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고,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음.
 - 최상층세대 다락의 테라스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입을 자제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에도 절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
 - 최상층세대 다락의 테라스에는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비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물품을 적재를 자제하시기 바람.
 - 최상층세대 다락은 동별 위치별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으로 인하여 조망권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세대 다락은 인접한 다른 세대 다락으로 인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최상층세대 다락에는 주방/화장실 등 무동력흡출기가 설치되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세대의 다락 외부 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세대 다락계단 설치로 일반 펜트리 삭제됨.

3. 면적 및 구조

- ①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하고,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분양당시 분양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감소면적이 계약면적의 2%미만일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 ② 세대 당 공급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
- ③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④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⑤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야 등)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⑥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 및 확장면적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홍보물(카탈로그, 팸플렛, 홍보관 내외부 사인물, 모형 등)

- ①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②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③ 홍보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④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음.
- ⑤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인쇄과정 상 오타, 오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 마감재리스트 등을 필히 열람하여야 함.
- ⑥ 각종 홍보물 상의 주민공동시설(문고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⑦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홍보관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 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홍보관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3. 기타 유의사항

- ▶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홍보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본 모집공고일 이전에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고,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된 내용은 고지 할 예정으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시공구간,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로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사량과 태양광 모듈 특성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당청동호수의 설계를 사전에 필히 인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상담 등은 청약(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고, 별도의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람.
- ▶ 계약 전 사업부지 주변 도로여건, 인근 건물신축계획 등 단지의 입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및 농작물경작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지) 조치함.
-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드를 무효처리함.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
-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 공간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음.
-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축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예정임.
- ▶ 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커뮤니티, 공동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주거공용부문인 전실 및 홀 등은 향후 입주자의 전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인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타사 또는 당사의 타지역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를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부담으로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이행하여야함.)
- ▶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비)을 입주자 부담으로 예치함.
-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입주 시 단지 배치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위(인테리어, 사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 분양 시 제공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엘리베이터 모델은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주체가 확정·설치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세대 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오차면적은 마지막 동·호수 세대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배치도상 공동주택 부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
- ▶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고,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 장비 및 집기 일체는 제공되지 않으며, 설치 시 입주자가 운영, 관리하여야 함.
- ▶ 단지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소음 및 불빛 등으로 사생활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택배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해당 동의 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계약 시 분양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실 대지 측량결과에 의한 설계변경, 기타 주택법,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하시는 계약자는 허가 기준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중 공정, 현장여건, 주변환경,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최초의 기준과 최종 시공 시점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호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기간 중에 입주하는 경우는 실입주시부터 부담)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및 공공기관 등 업무상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의 단지, 내·외관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 후면, 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 여부와 방음벽 방음림 등 식재여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향후 입주 후 주변 건축물 및 시설(도로, 공원 등) 공사가 진행 될 경우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당사 홍보관은 59A 기준층(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 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환기방식은 급배기 방식임.
- ▶ 당사에서는 기타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제외)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 임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인 사전점검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 허가없이 무단 현장 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 단지 외벽에 설치될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경관 조명 포함)는 표시위치, 수량, 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빚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18일 제44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 지하주차장은 스킵플로어 주차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주차공간은 지하2층~지하4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지하1층~지하2층에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음.
-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입주인 주차공간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공간이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동선이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대비관련 사항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함
 - 하향식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음
 - 하향식피난구 형태 및 위치는 인허가, 각종 인증 및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블럭 공동주택 3층(1, 2(중정방향 근린생활시설 상부), 3(40m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상부), 5(오피스텔 상부)호라인)에 설치되는 옥상녹화는 단지 내 조경공간이므로 입주자의 전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공동주택 특정 호수의 경우 건축물 입면 구조물 설치로 인한 시각적 간섭으로 일조 및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동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조망,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 재활용쓰레기수거함은 지하1층에 설치 예정이며, 수거차량의 진입이 불가함.
- ▶ 1블럭 지하1층, 2블럭 지상1층에 개방형화장실이 설치예정임.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 분	등 급
내진 중요도	VII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I ~ XII)으로 표기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5-12번지

■ 홈페이지 : www.gn-pradium.co.kr

■ 분양문의 : ☎ 1544-2877